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2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6일

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이승미, 이병도, 권순선,
박기재, 오현정, 황규복,
김정태, 이호대, 김경우 의원
(9명)

1. 제안이유

- 위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,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체육시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함.

2. 주요골자

-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6조제3호 중 “문화·관광시설”을 “문화·체육·관광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</u></p> <p>4. ~ 9. (생 략)</p>	<p>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문화·체육·관광시설</u>----- ---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